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혜연 의원 대표발의]

검토의견서

2023. 4. 5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서 용 관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과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5일 전혜연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4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읍·면·동 복지회관의 사용료 면제 규정을 확대하여 복지회관을 효율적 으로 관리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일부개정에 따라 조례 내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읍·면·동 복지회관의 사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
 - 제3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의회가 동의한 경우
- 나.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8조, 제15조)
 -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 → (개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다. 관련부서 : 재산관리과

라. 입법예고 : 2023. 4. 5. ~ 4. 10. (6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읍·면·동 복지 회관의 사용료 면제 조항을 확대하여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 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 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4호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사용료를 면제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 제점은 없어 보임

붙임1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 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고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② 생략.

-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7. 생략
-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 우
-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 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年數)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 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 2. 제13조제3항제21호·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한 경우
-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 규칙 개정에 따라 제명 정비 및 상위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명시된 사용료 면제 조항을 읍·면·동 복지회관의 사용료 면제 조항으로 확대하여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

2. 미 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한시적 경비 총3억원 미만에 해당 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반영 등 재정수반요인이 없음

4. 작성자

재산관리과장 김주헌